

장애인가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Policy for Competitive Advantage of Disability Firm

원준호* · 이정섭** · 송수정*** · 강경식****

Jun Ho Won* · Jeong Seb Lee**

Soo Jeong Song*** · Kyung Sik Kang****

Abstract

Supports the activity of the disability firm the policy which is active for is unsatisfactory. The positive promotes the activity of the disability firm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and raises presents the politic plans for the competitive power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firm the fact that the economic · social positions of the disabled person and with the aim

1. 서론

국내·외적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욕구가 사회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1990년에 「미국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ADA)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5]. 영국은 1990년에 미국의 장애인법이 통과되자, 이를 계기로 1995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을 제정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돕고 직업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9]. 일본의 경우도 1950년에 「신체장애자복지법」 제정 이후 1964년 장애인올림픽 이후 장애인의 사회통합 이념이 정착되면서, 기존의 법체계를 근간으로 1993년에 「장애인기본법」으로 개정·통합하여 장애인의 사회재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6].

본 논문은 명지대학교 안전경영연구소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논문 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연구원

*** 신성대학 물리치료과

**** 명지대학교 안전경영연구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표적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1989년에 제정하였고, 1999년에 이를 전면 개정하였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2005년에 제정하여 “장애인기업”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제정이 장애인기업에 과연 실효성을 갖고, 진정 장애인기업을 위한 정책이었는가에 대한 회의에서 여전하다. 우리나라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 관련 정책은 장애인을 소극적인 시혜대상으로 파악하여 생계 및 의료지원등의 복지정책과 의무고용 및 취업알선 등의 고용촉진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은 미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2. 장애인기업의 국내·외 정책

2.1 미국 : 제대군인기업가정신과 중소기업개발법

미국의 장애인법인 ADA는 개별 장애인들의 미국 내의 사회·경제적 시스템 내에서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은 제대군인(veterans)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 법안은 1999년에 제정된 「제대군인 기업가정신과 중소기업 개발법」(The Veterans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Development Act of 1999: VESBD)이다. 동법을 다루는 주관 부처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이며, 본법 내에서 국립제대군인창업지원법인(National Veterans Business Development Corporation: NVBDC)이 설립되어 제대군인들의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 및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VESBD의 체계를 살펴보면 동법은 전체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일반적 규정(general provisions), 제2장 제대군인 사업 개발(veterans business development), 제3장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 제4장 자금 지원(financial assistance), 제5장 정부 조달 지원(procurement assistance), 제6장 보고 및 자료 수집(reports and data collection), 제7장 기타(miscellaneous provisions) 등이다[10].

2.2 영국 : 사회적 기업

영국은 미국과 동일하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사회·경제적 시스템 내에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용, 공공 및 민간 부문 등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인 중심의 “기업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장애인들

이 다수 고용·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목적의 사기업(제1섹터)과 비영리의 공공조직(제2섹터)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제3섹터의 비영리조직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70년대 유럽에서 비영리단체들이 국가나 지방정부·기업이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해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제도 개혁과 맞물리면서 발전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명확하게 정립된 기업이기보다 현재도 계속 진화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은 나라마다 역사와 전통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1991), 벨기에의 ‘사회적 목적기업 (social purpose company)’(1995)을 비롯해서 이후 몇 년 동안의 프랑스의 ‘집단이익 협동조합(collective interest cooperative)’, 스페인의 ‘사회적 목적 협동조합(social initiative cooperative)’, 포르투갈의 ‘사회연대 협동조합(social solidarity cooperative)’ 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뒤늦게 시작되었던 영국에서는 2001년에 통상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산하 사회적 기업국(Social Enterprise Unit: SEU)이 설치되었고, 2004년에는 사회적 기업들이 공동체 이익 회사라는 새로운 법적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지역공동체경제협동조합’(community interest company)에 대한 논의가 의회에서 진행 중이다[9].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는 ‘영리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기업’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에 의해서 정의되기도 한다.

첫째, 사회적 기업은 재화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사회에 제공한다. 그 성립과 운영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적기관과 달리 상당 수준의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이다.

둘째, 사회적 기업은 생산의 잉여를 사회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비상업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 및 자원봉사나 기부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자율성, 독립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성격을 가진다. 즉,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혹은 특정 인구집단에 봉사하고 사회적 책임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집단이 자발적으로 성장시킨 기업이다.

셋째, 사회적 기업은 ‘1인 1표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자본적 소유권에 기초하지 않은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조직의 활동 및 방향성에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킨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지역 수준의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것이 명시적 목적 중의 하나이며, 제한적으로 이윤분배를 허용한다.

2.3 일본 : 특례자회사제도

일본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특례자회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특례자회사제도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특별 배려 차원에서 설립 인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이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도 해당 사업체의 의무고

용률 산정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의미하고 있다. 특례자회사의 설립 인정요건은 ① 모회사와 인적 관계 및 영업상의 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하고, ② 고용된 장애인 수는 5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③ 전체 노동자 중에서 장애 노동자의 비율이 20%를 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6]. 일본의 특례자회사 유형은 민간 기업이 100% 출자한 경우(민간형),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한 경우(제3섹터형), 민간기업과 사회복지법인이 공동출자한 경우(복지조인트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1996년 이후 제3섹터형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연계형은 경영·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며, 민간회사 주도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례자회사의 주요 사업내용은 모기업이 아웃소싱을 통해 조달하던 인쇄·우편·총무·여행 등의 서비스 업무, 모기업의 사업 부문 중 장애인에 적합한 데이터 입력, 소프트웨어개발, 원예사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례자회사는 장애인 고용이 5인 이상, 전체종업원의 20%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30%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회사 임원중 적어도 1인 이상은 모회사의 임원 혹은 종업원으로부터 선임되고, 자회사의 종업원 중 상당수가 모회사에서 파견되는 등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인적교류가 긴밀해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전임지도원을 배치하여 적절한 장애인 고용 관리를 해야 하며 제반사항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 충족되는지 노동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2002년 10월부터는 특례자회사 이외에 모기업의 다른 자회사(관계회사)에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계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도 모회사의 장애인 고용률에 계산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2].

3. 장애인가업을 위한 정책 방안

3.1 장애인가업 관련 정책자금의 일원화 모색

그간 장애인 창업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처 등)는 <표 3-1>와 같은 자금 지원제도들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제도들이 실행하게 된 주요 배경은 장애인들이 일반 기업에 취업하기 용이하지 않자,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자영업을 선택하여 왔고 그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장애인 창업을 지원해 왔다. <표 3-1>를 보면, 노점상 및 노점상 이외의 자영업을 영위하는 장애인수가 총 31.3%(225,360명)로 경제 활동을 하는 장애인의 종사상 지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의견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주라고 한다. 현행 장애인가업법에 따라 이들을 장애인가업(가)로 고려해 본다면, 22,000여개의 장애인가업이 산출되고 있다[3]. 장애인 고용주와 자영업주를 단순히 합하면 장애인가업 수는 대략 24여 만개가 넘는다. 한편, 대부분의 장애인가업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형태의 기업임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장애인가업 관련 정책을 맡게 되었다. 즉, 장애인가업 정책은 장애인복지 차원의 사회 정책과 다른 기업 정책 혹은 경제 정책이다. 결국, 장애인가업 정책은 일원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창업 및

성장 단계에 있는 다수의 장애인기업들이 자금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음을 적시함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기업과 관계된 자금 지원 정책에서 일원화된 체계로 운영하여야만, 장애인기업들이 자금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 기존의 장애인 창업 관련 자금지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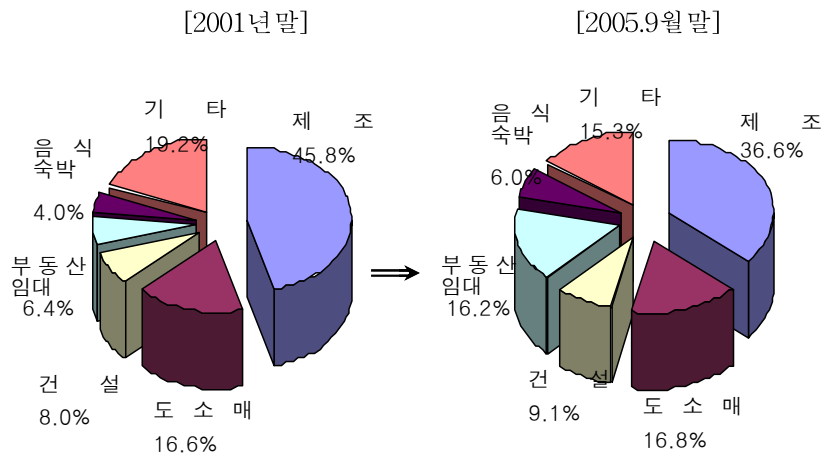
지원기관	지원제도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 지원(60억원) - 창업자금 5천만원 한도지원(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 지급일로부터 2년 동안 이자만 납부, 3년째부터 7년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분기마다 납부) - 전세자금 개인 1억원, 공동창업 3억원 한도지원(전세금의 연 3% 전대로 월납 혹은 2%일시선납, 지원기간은 1년 단위로 5년까지 연장)
보건복지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장애인의 창업 지식 습득 자금지원(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가구당 2,000만원 한도(1,200만원까지 신용용자) - 연리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이군경 및 유족에 대한 창업 자금지원 - 가구당 5천만원 한도, 연리 3% 4개월 이후 7년간 균등상환)

3.2 신용보증 접근의 편의성 도모

장애인기업은 자금 조달상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일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의 애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기업도 담보 여력의 부족으로 신용보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무담보에 의한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 선호는 비단 장애인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중 은행들의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는데, 이의 주된 이유는 소액대출의 높은 관리비용, 정보 비대칭, 높은 위험인식, 담보부족 등이다[4]. 신용보증에 대한 일반 관점은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건전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므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적지 않다. 그러나 보증 사고율을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높다’ 또는 ‘낮다’로 평가해야 할지 아직 공유된 지식이 없다[8]. 또한, 신용보증은 사고율로 인해 그 목적이 등한시 되어 저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한 국민경제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주체이다. 그러나 어느 경제에서든지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이나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채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자본주의에서 기업은 부자들만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문제, 다시 말해 자본주의 금융시장에서의 시장실패를 개선·보완하는데 일부 기여하는 제도가 바로 신용보증제도인 것이다[8]. 최근 정부의 신용보증 관련 정책은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그 방향성을 잡고, 신용보증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 이의 배경에는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잇따른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ECD, IMF 등의 비판은 우리나라 금융환경 및 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정부의 신용보증 축소 방향은 장애인가기업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시중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자금 접근성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은행차입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대출구성 면에서는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내수에 민감한 서비스업종에 대한 대출비중과 소호(SOHO)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아져 중소기업대출의 신용위험이 경기상황에 크게 영향 받는 구조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소비밀착형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내수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그림 3-1>과 <표 3-2>.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관의 손실 누증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효율적 운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고액(15억원 초과)·장기(5년 이상)·우량 수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축소하고 부분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영역을 특화하고 중복보증을 해소해 나갈 방침을 갖고 있다[7]. 근본적으로, 이러한 국내·외의 신용보증에 대한 현실적 제약 내에서 장애인가기업에 대한 신용보증도 크게 확대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와 아울러 신용보증의 국민경제적 역할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함께 장애인가기업 스스로의 자체 역량 강화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 업종별 중소기업대출 구성 변화

<표 3-2>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단위 : %)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2005.9월
중소기업		1.9	2.1	2.3	2.3	2.2
업 종	(제조업)	(1.8)	(2.2)	(2.7)	(2.3)	(2.0)
	(음식숙박업)	(1.6)	(2.4)	(3.2)	(4.6)	(4.2)
업 태	(개인)	(1.8)	(1.9)	(2.2)	(2.7)	(2.7)
	(법인)	(1.8)	(2.3)	(2.4)	(2.1)	(2.0)

자료 : 한국은행(2006), 일반은행 기준(업종·업태별연체율은 시중은행 기준)

무엇보다도 신용보증의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려면, 신용보증의 수혜자인 장애인기업 스스로의 책임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에서 일반 중소기업과는 다른 대안들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즉 장애인기업들에게 신용보증 접근의 편의성 도모 및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안들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사례들로는 인터넷 이용을 통한 접근,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보증 대출, 준비 서류의 간소화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율의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3 중앙 및 지역금융지원제도의 활용도 제고

다수의 장애인기업들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중소기업(장애인기업 포함) 자금지원 정책이 다수 존재함에도 무엇(what)이 있고, 이를 어떻게(how) 활용할지를 잘 모르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례로, 최근 지역정부의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지역재단에서는 '저소득층 창업 및 자활지원 특례보증제도'를 16개 지역재단으로 확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2006년 지원규모 30억원(150개 업체, 2천만 원 이내), 지원조건 연 4.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방법 재원출연(서울시), 보증추천 및 사후관리(사회연대은행)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기업을 포함하여 일반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중기 자금지원 정책은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현재보다 더 현장 지향적인 정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 정책기조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그 성공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접근성에서 원활하지 못한 장애인기업들에게는 요원한 정책일 수도 있다. 장애인기업은 전국 지역에 산재해 있다. 지역에 있는 장애인기업들이 지역 가까이에 있는 지역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들의 자금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들의 노력이 한층 더 가속화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더 옥 중요한 것은 수요자인 장애인기업 스스로도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사에 부합되는 지원정책은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일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3.4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가점 실효성 방안

우리나라 전체산업 중 장애인가업은 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지원규모가 큰 4대 사업 정책자금지원, 기술혁신개발사업, 쿠폰제 경영컨설팅, 생산설비정보화사업 등의 선정비율은 장애인가업 0.05% 으로 사업체수에 비해 선정비율이 낮게 나타났다<표 3-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현재 장애인가업에 2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가점의 합이 5점이상 일때 신용등급 1단계 상향 조정되어 신용등급별 대출 금리체계 우대 적용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장애인가업은 일반기업에 비하여 등급 상향조정 수혜율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정책자금 수혜업체 중 장애인가업의 경우 신용등급 상향에 대한 효과성은 낮으나 장애인가업 가점 상향 조정이 요구된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현재 장애인가업에 2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장애인가업 1.1%로 사업 선정여부에 기여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가업이 선정된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고, 선정평균점수, 선정율이 일반기업에 비해 근소하게 미달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가점의 순기능이 기대된다. 생산설비정보화사업은 현재 장애인가업에 2점의 가점부여 하고 있으나 선정여부에 기여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생산설비정보화 사업에 지원하는 기업은 선정여부에 따라 선정점수에 크게 미달되어 가점(2점)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쿠폰제경영컨설팅사업은 현재 장애인가업에 10점의 가점부여하고 있어 가점활용도는 타 검토대상사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원한 장애인가업의 사업선정도가 매우 높고(100%), 지원·선정점수가 일반기업에 비해 높아 가점운영 대상의 재검토가 합당하다. 이에 가점적용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표 3-3> 장애인가업의 지원사업 선정비율

(단 위 : 개, %).

구 분	총 선정업체	장애인가업	
		업체수	비율
정책자금 지원	17,466	4	0.1
기술혁신개발사업	2,017	21	1.1
생산설비정보화사업	362	-	-
쿠폰제경영컨설팅	3,733	2	0.05

※ 생산설비정보화사업은 '08년 사업자료로 분석

장애인가업의 취약한 경영여건을 보조하기 위한 가점제도는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효용성에 큰 편차를 나타낸다. 정책자금 가점은 상향조정, 기술혁신개발 및 생산설비정보화사업은 대안모색, 쿠폰제경영컨설팅 사업은 가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 지원사업 가점제도를 대상으로 합리적 가점수준 도출을 위한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장애인기업 관련 정부 정책 방향 혹은 대안들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기업은 자금 및 판로 부분에서 애로가 많음을 적시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 및 판로 부분의 애로는 일반 중소기업의 문제와도 동일한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특별히 장애인기업의 문제로만 한정해 언급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인기업과 관련한 자금 부분에서의 정부의 정책 대안으로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창업 정책자금 체계의 일원화, 지역신보 및 재단 등을 통한 신용보증 접근의 편의성 제공, 적기에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체계로 장애인기업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전체 지원사업 가점제도를 대상으로 합리적 가점수준 도출을 위한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기업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판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품질(quality)의 확보, 적절한 가격(cost),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인도(delivery) 등에서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정부의 판로 정책이 부가된다면(예: 홍보 등), 장애인기업의 판로 문제도 부분적으로 보완될 것으로 판단된다.

5. 참 고 문 헌

- [1] 강동수. 「신용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KDI 연구보고서, (2005) :113-117.
- [2] 변민수. 「특례자회사 설립 법적 구성요건 검토」. 고용개발원연구실연구원, (2005) :89-92.
- [3] 보건복지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2005).
- [4]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 외국의 운영사례와 평가」, (2004) : .
- [5] 안형주. 「미국의 보훈제도」. 국가보훈처-보훈교육연구원, (2005) :21-23.
- [6] 장창업. “일본 장애인고용의 최근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장애인고용」. 43(2002) :128-142.
- [7] 정길영 · 차전영. 「신용과생상품과 자산유동화를 이용한 중소기업대출 원활화 방안」.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6).
- [8] 홍순영 · 이종욱. 「신용보증의 국민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신용보증과 경기변동과의 관계분석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2005) :122-125.
- [9] 황덕순.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확산과 국가의 지원”. 「국제노동브리프」, 2(5) (2004) :1-3.
- [10] VESBD. The Veterans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Development Act of 1999, (1999)
- [11] <http://www.sba.gov/VETS/>